



『소비자정책 발전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출범과 새로운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향후 추진할 정책 청사진으로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동 발전방안 발표로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이 일단락 되어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 안전, 정보제공, 교육 등 각 분야별 소비자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금번 추진체계 개편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티대가 구축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질서 형성’에 주안점을 둔 정책목표 및 원칙으로의 전환이 필요,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에서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소비자주권 실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고, 이와 더불어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소비자와 기업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아래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지자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며, 지방소비자, 취약계층, 국제소비자 이슈 등 그간 소외되었던 소비자문제에 대해 균형 있는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는 등 「자율·책임·협력·균형」의 4대 정책원칙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력체계 정립방안으로는 품목별·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소비자정책의 일관성·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공정위로 이관된 소비자원과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통해 소비자정책 추진역량을 극대화하며, 또한 소비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소비자운동의 활력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의 공동사업 추진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추진효과를 제고함과 아울러 공정위·지자체·소비자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업무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내 소비자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정책 중점 추진과제 및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로 인한 국경을 넘는 거래의 활성화, 인터넷을 통한 편향적 정보의 범람 속에서 소비자가 최종 심판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소비자정보 제공에 주력할 것이며 ▶공공기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소비자정보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위·통신위·경찰청·소비자원·소비자단체·지자체 등 상담·신고기관 간에 사기성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둘째, 현재 250여개 기구에 의해 구심점 없이 수행되고 있는 소비자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용적·통합적인 교육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합리적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태도 등 소비자능력(capability)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활용하고 ▶정부·지자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학계 등을 네트워크화 하는 소비자교육 실행협력체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신기술, 환경오염 등 소비자위해요인 증가에 대응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안전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며 ▶공정위내 소비자



안전 담당부서 설치 및 부처간 협의체제 구축 · 운영을 통해 소비자안전정책의 종합적 ·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며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 분석하고 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 공하기 위한 통합위해정보시스템을 강화할 방침 이다.

넷째,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부당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거래규범을 마련하고, 다수 소비자피해 증가 등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거래 관련 법령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정비하고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소비생활센터 등 전국 상담기관들을 연결하는 상담 정보 공유시스템 및 통합 상담정보 DB를 구축하 며 ▶표시광고법 등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동의명령 제 도입을 추진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소비자원 소송지원 예산 및 인

력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방소비자, 취약계층 등 그간 소외되었던 소비자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적 대응 을 할 방침이며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 · 지방의회 ·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 하는 권역별 지방소비자문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지방소비자시책 활성화를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사업 지원, 소비자안전대책 마련 등 취약계층 소비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한 · 미 FTA 체결 등 시장의 세계화 진전으로 인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외 소비자피해구제제도 DB 구축, 소비자정책 집행 당국간 국제 소비자피해구제 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국제 소비자피해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의 소비자정책과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관 제 ·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의 신규 보급을 확대하고, 현재 보급된 표준약관 중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약관에 대해서도 3년~5년 주기로 개정을 추진해 나가 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마련 하여 심사청구하였거나 소비자원이 제정을 건의 한 해외연수 수속대행약관, 신용카드 이용약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등 3개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표준약관을 마련,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관계부처, 소비자원 등에서 요청한 은행거래약관, 자동차매매약관, 택배이용약관 등 이미 보급된 3개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우선 검토 중에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약관의 신규 제정 · 보급이 필 요한 분야와 이미 보급된 현행 표준약관의 사용 실태, 문제점 및 개정 수요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종합적인 표준약관 제 ·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소비자피해가



급증하여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표준약관의 신규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 거래여건 변화, 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한 현행 표준약관에 대해서도 3년~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

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업자, 소비자 등 거래주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표준약관을 거래여건 변화에 맞게 개정해 나감으로써 표준약관의 실효성 제고 및 바람직한 계약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2007. 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7년 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7년 5월 2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7년 4월중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7. 5. 2. 현재 402개로 전월 대비 3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51개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7. 5. 2. 현재 804개로 전월 대비 7개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상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7. 5. 2. 현재 1,206개로 전월대비 10개사가 증가하였다.

〈2007. 4월중 계열사 변동 현황〉

기업집단	2007. 4. 13	편 입				제 외							증감	2007. 5. 2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1개)	399	2	1	-	3	-	-	-	-	-	-	-	3	402
상호출자 ·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62개)	1,196	3	6	1	10	-	-	-	-	-	-	-	10	1,206

공정위 소식



〈2007. 4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10개사(회사설립 : 3, 지분취득 : 6, 기타 : 1)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현대 자동차	현대커머셜(주)	할부금융업	회사설립	-	-	-
에스케이	풀빵닷컴(주)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공급업	지분취득	-	-	-
지에스	지씨에스플러스(주)	종합리조트 위탁 관리운영 용역사업	회사설립	-	-	-
케이티	제일에프디에스(주)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서비스업	지분취득	-	-	-
씨제이	(주)매직티브이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사업	지분취득	-	-	-
에스티엑스	에스티엑스 오일엔서비스(주)	에스티엑스 오일엔서비스(주)	지분취득	-	-	-
	에스티엑스 탱크터미널(주)	유류, 화공약품, 가스, 운반업 및 보관업	기타			
이랜드	(주)풀앤하프	건물종합관리업	지분취득	-	-	-
세아	(주)호연관광 레저산업	숙박업	지분취득	-	-	-
태산광업	동림이엔씨(주)	토목, 건축공사업	회사설립	-	-	-